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글 |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법학박사
 dckang@kisa.or.kr

1. 들어가는 말

최근 수년간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이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의 급증과 지속적인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우려는 2011년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이라는 처방까지 나오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카드사의 1억 건 이상의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외의 금융권, 이동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속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도서관 등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왜 보호하여야 하는가? 라는 근본 개념의 이해와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2.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될 경우 정보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조합하여 조건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주소, 전화번호, 위치정보,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재산정보 등은 독자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든지 쉽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3. 개인정보의 중요성

현대 정보사회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 가공 및 유통되는 정보에 의존하여 사회구성원의 제반활동이 유지되고 발전해 가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수년 동안은 정보사회가 보다 고도화된 정보화사회로, 즉, 그 모습과 유형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정보사회로 진일보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업무를 보며,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고, 또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인류 문명에 은혜로운 혜택만을 준 것은 아니었다.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더욱 정보수집과 처리를 용이토록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개인에 대한 감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더욱 그 정보화 역기능의 위험성이 커지도록 한다. 개인정보 침해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들은 끊임없는 텔레마케팅 수신, 광고성 문자와 이메일 수신 등 원치 않는 광고를 수신하며,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등은 개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긴다. 또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격권 훼손 등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입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도용은 커다란 재산적 피해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자신이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네트워크 환경을 불신하게 되고,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국가는 현대사회를 통괄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기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체제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필수적인 전자정부의 추진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되면, '전자정부 3.0' 등 정부의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국가브랜드가 하락하게 되고, 전자정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 및 실제 정보 제공, 이용주체들의 행태에 대한 규율의 수준을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 자체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더 높은 '비난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에는 많은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개인정보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주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 수집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이에 준하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기재한 회원가입신청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회원증 등을 발급한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준)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도서관마다 다소 달라서 수집하는 도서관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만 수집하는 도서관이 있다. 이렇듯 도서관마다 개인정보 수집 행태가 다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르게 해석하였거나, 법령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일부 도서관은 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과 동의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2)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곧 시행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2014.8.7.시행)은 주민등록번호 관련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 사항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요구를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외에는 그 처리가 금지된다고 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및 제34조의2 제1항, 2014.8.7.시행).

나아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

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수집하더라도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삭제 조치와 곧 다가 올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고객의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등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인지, 법령에 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급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회원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무조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최근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모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및 이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도서관도 이제는 최신의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회원관리, 도서대출, 복지혜택 등 대부분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도 보다 고객정보 시스템에 대한 안전관리에 집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차등부여, 사용자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침입방지 시스템, 비밀번호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의 일방향 암호화, 시스템 및 각 직원 PC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전산실이나 자료보관실 출입통제 등 관리적·보호조치는 필수적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6. 맺는 말

이상에서 기술한 개인정보 보호원칙 이외에도 알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많다. 도서관 등 기관에서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신고절차와 방법,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가 아니라, 스스로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의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안전 매뉴얼이 있더라도, 이를 보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결국 제2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재차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른 유출당한 많은 고객의 심적 고통은 물론이고, 만약에 발생하게 될 경제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만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곧 도서관 등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얻는 길일 것이다. 📖